





| 보고<br>h·well<br>국민건강보 | 보도참고자료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|
| 배 포 일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| 2020. 4. 10. / (총 5매) |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|
| 보건복지부<br>보험정책과        | 과      | 장 | 진 영 주                 | <u> </u> | 전 | 화 | 044-202-271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딩    | 사 | 김 도 균                 | <u>.</u> |   |   | 044-202-2706 |
| 국민건강<br>보험공단          | 부      | 장 | 이 영 우                 | 2        | 전 | 화 | 033-736-2504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팀      | 장 | 김 진 흐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  |   | 033-736-2566 |

#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!

-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) 하위 50% 이하 보험료 50% 경감, 그 외 지역 하위 40%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~50% 경감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%,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%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(30~50%)한다고 밝혔다.
  - 이는 최근 **코로나19**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예산(국비2,656억원, 3.17일)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(3.30일)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.
    - \* (추경) 전국 하위 20%(특별재난지역 하위 50%)의 건강보험료 50% 3개월 경감
    - \*\* (비상경제회의)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% 초과~40%의 건강보험료 30% 3개월 경감
  - 이를 위해 「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」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·시행하였다.









- □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 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,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.
  - 특별재난지역 하위 50%는 건강보험료의 50%를 경감받으며,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%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%, 하위 20% 초과부터 40%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%를 경감받게 된다.
  -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(직장 40만명, 지역 31만명), 그 외 지역 1,089만 명(직장 665만명, 지역 424만명) 등 총 1,16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    - \* (3개월 경감액) 직장가입자 12만6805원. 지역가입자 1만7874원
- □ 대상자는 **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**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.
  -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(4.13~17일)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,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.

< 붙임 > 주요 질의응답











## 붙임

## 주요 질의응답

### 〈 공통 〉

#### Q1. 경감이 3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?

예,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.
경감 시행기간은 '20.3월~5월까지 3개월입니다.
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
4월 고지서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.

## Q2.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예,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경감은 기존에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.

# Q3.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, 3~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예, 그렇습니다.

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, 4~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,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


#### 〈 지역가입자 〉

## Q1.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,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?

예,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(5월)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 Q2.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가면 기존 경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## 〈 직장가입자 〉

#### 01.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○ 이번 경감은 **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** 있습니다.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**경감률에 차이가 없습니다.** 

## Q2.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?

예, 그렇습니다.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.









#### 03.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?

○ 예,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(본사)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습니다.

#### 04.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지?

○ 예, 그렇습니다.

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(급여명세, 급여입금내역자료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05. 가입자가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,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

